

강원도의회 제298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강원도의회 제298회 임시회(3.16.~3.25.)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298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12건

상 임 위 원 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1. 03. 25.)
기획행정 위원회 (2)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상규 의원	수정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병석 의원	수정
농림수산 위원회 (2)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박효동 의원	수정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금석 의원	수정
경제건설 위원회 (5)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영섭 의원	원안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	원안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병구 의원	원안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성호 의원	수정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원 의원	원안
교 육 위원회 (3)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영미 의원	원안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조성호 의원	원안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남상규 의원	원안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298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1. 03. 25.(목)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단,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9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4)
- 공동발의 : 김준섭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속초2), 박인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2)

강원도(이하 “도” 라고 한다) 재향경우회가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여 강원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에 대한 봉사과 치안협력 및 공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재향경우회원의 예우·추모 및 기념을 위한 사업,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평화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도민의 안전보호 및 공익활동 등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본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남상규 의원



김준섭 의원



박인균 의원

▣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4)
- 공동발의 : 박병구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1),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이병현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정선1)

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에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 라 한다)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도 주관 행사에 초청하거나 기부자명단을 각종 매체 등에 공지할 수 있으며 도지사 표창장·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및 기부자 예우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김병석 의원



박병구 의원



박윤미 의원



심영미 의원



이병현 의원



장덕수 의원

■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조례안

■ 대표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더불어민주당·고성)

■ 공동발의 :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2),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철원2), 함종국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횡성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해양공간 관리에 중요 사항,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두며, 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변경을 위해 지역협의회를 두고,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와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박효동 의원



신명순 의원



한금석 의원



함종국 의원

■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철원2)

■ 공동발의 : 박병구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1),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2), 함종국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횡성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원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 소속의 강원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고, 본 협의회에서 피해보상 및 지원, 사전협의 및 가축전염병 피해의 종류·규모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한금석 의원



박병구 의원



신명순 의원



함종국 의원

■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심영섭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신영재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1),
이상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1),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철원2)

도내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이하 “청년미취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청년미취업자등의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년 미취업자등을 위해 고용지원 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청년미취업자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청년미취업자등을 고용하거나, 작업환경을 개선한 경우 또는 중소기업에 고용된 청년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심영섭 의원



박효동 의원



신영재 의원



이상호 의원



한금석 의원

■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의회운영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철원2)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생활임금을 장려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의 생활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생활임금 지급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는 도와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직접 고용된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도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까지 적용한다. ② 도지사는 도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그 위탁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위탁계약 체결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노무비가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지영 의원



김진석 의원



박윤미 의원



윤석훈 의원



한금석 의원

■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박병구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1)

■ 공동발의 : 곽도영 의원(의장 · 더불어민주당 · 원주5),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동해2),
이병헌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백년기업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백년기업 인증계획, 백년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백년기업을 인증하고, 전업,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백년기업에 대해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선정된 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박병구 의원



곽도영 의원



김형원 의원



이병헌 의원



조성호 의원

■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 공동발의 : 나일주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정선2), 이병헌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인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위하여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로컬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망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인프라 확충,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로컬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 로컬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로컬벤처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강원 로컬벤처기업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성호 의원



나일주 의원



이병헌 의원



조형연 의원

■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동해2)

■ 공동발의 :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양구), 김상용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삼척1)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장애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김형원 의원



김규호 의원



김상용 의원

■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 대표발의 :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발의됐다.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담당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고,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비만 예방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 공동발의 : 최재연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1),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4),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신영재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1), 이병헌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한금석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철원2)

도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지원 방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업중단 현황조사, 원인 분석 및 진단, 교육 및 상담,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성호 의원



최재연 의원



권순성 의원



김경식 의원



김병석 의원



박윤미 의원



신영재 의원



이병헌 의원



한금석 의원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4)

■ 공동발의 : 이종주 의원 (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2),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및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 사업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상규 의원



이종주 의원



정유선 의원



허소영 의원